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두 달

2015. 9. 1.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가 시행 두 달을 맞았습니다. 조세, 형사, 외국환거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 법무법인의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 법률자문팀’이 그 동안 이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히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의 필요성

-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세법상 가산세(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와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가 면제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명단공개가 면제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법무부 합동담화문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는 등의 형사관용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90여 개 국가와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CRS)’을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해당 국가 소재 금융기관이 한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금융계좌 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 금융계좌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국가는 다른 국가와 동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제도는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엠네스티(Amnesty) 제도로, 오랜 격론 끝에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을 계기로 일회적·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도의 근거 법령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38조는 201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에 대하여는 역외탈세금융정보 인프라와 국 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적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무엇보다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90여 개 국가와의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CRS)’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한국 거주자의 역외재산(금융재산, 부동산 등) 및 역외소득(이자, 배당 등 자본소득, 부동산소득 등)은 한국 등 관련 과세당국에 알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 자진신고 대상자

-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대상자입니다(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 국내 세법상 예전에는 거주자이었으나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 시점의 미신고 국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국의 국내 세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인(人)이 둘 이상의 국가의 거주자(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결정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게 됩니다.
- 자진신고 대상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2016. 1. 31.까지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전자격심사 결과 통지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주자’ 여부에 대하여는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자진신고대상 소득·재산

- 자진신고대상 소득은 ‘국외소득’으로 한정되므로 자진신고를 하면서 국내소득을 함께 신고하더라도 국내소득에 대하여는 자진신고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자가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는 매월 말일의 잔액(2013년 신고분까지는 매일의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자진신고시 해당 연도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자진신고·납부 방법

-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내의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진신고 시에는 ‘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서’와 법인세, 소득세 등 각 세목별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계산서, 해외금융계좌신고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한 세금은 2016. 3. 31.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각 세목별 귀속 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6. 6. 30.까지 그 30%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세종의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 법률자문팀’ 구성 및 실적

- 법무법인 세종은 그동안 다수의 역외재산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사건 처리를 한 변호사, 회계사들로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 법률자문팀’을 구성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은 2015. 2.부터 2015. 6.까지 국세청의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에 대비한 AXIS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한미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FATCA(미국법),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은 2015. 7.부터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90여 개 국가와의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CRS)’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종합적인 CRS 연구용역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은 2014년 미주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미국에서 “FATCA의 시행으로 인한 한미 금융계좌정보 공유가 갖는 의미(자산관리 등)”에 대해 4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의 역외재산 자진신고(혹은 미신고) 관련 주요 자문 및 사건 처리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대기업 대표가 M&A 결과로 해외에서 자녀 명의로 취득한 수 천억 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증여세포탈 수사 및 형사재판 사건
 - ⇒ 자녀명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 펀드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증여세포탈 수사 및 재판사건
 - ⇒ 해외금융계좌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부과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자문(명의신탁 주식 등도 함께 문제된 사안)
 - ⇒ FATCA 시행과 관련한 외국 금융기관 한국지점의 정보 수집 범위, 한국 과세당국에 대한 보고대상 정보 등에 법률 자문
 - ⇒ CRS 시행과 관련한 외국 금융기관 한국지점의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고(한국 과세당국 등)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 일본 국외재산조서 제도(한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와 유사)의 시행과 관련한 재일교포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종합 법률 자문
 - ⇒ 이중거주자 여부,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한국 외에 존재하는 재산 및 소득의 처분 방안에 대한 수 건의 종합 법률 자문(문제되어 검토되어진 국가 :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러시아, 태국 등)
 - ⇒ 조세조약 및 해당 국가의 조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 등에 대한 종합 법률 자문
 - ⇒ 본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시행에 따른 “자진신고 필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 법률 자문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9. 1. 자) 다운받기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성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28	E-Mail. ysulee@shinkim.com
● 최성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405	E-Mail. sjinchoi@shinkim.com
● 홍탁균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85	E-Mail. tkhong@shinkim.com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TEL. 02 316 4219	E-Mail. ihchung@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